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9월 26일

발 의 자 : 박춘선, 경기문, 김경훈,
김규남, 김동욱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일, 김원태,
김지향, 김춘곤, 김혜지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성연, 박영한, 박칠성,
박환희, 소영철, 송경택,
신동원, 심미경, 유정인,
이경숙, 이승복, 이영실,
이용균, 이은림, 이종태,
장태용, 최민규, 최윤희
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- 민간에서 전광판, 조명 등의 대중 표출시설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고농도 발생 시 상황 전파와 시민행동 요령 안내, 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 서울시 대기질 개선과 피해 저감을 위한 대 시민 홍보 활동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민간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의 지원) 시장은 기업,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4조(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의 지원)</u> <u>시장은 기업,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</u> <u>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</u> <u>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문서번호

2022091600000002

미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박춘선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2.09.16.

회신일 : 2022.09.19.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침부 근거 규정
3. 미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 (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의 지원) 중 기업,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 (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의 지원) 중 기업,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5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